의안번호	제310호
의결연월일	2021.03.24.

-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02. 24. 임애민, 이상우, 강선구 의원

○ 회 부 일 자 : 2021. 03. 09.

○ 상 정 일 자 : 2021. 0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발의자 대표: 임애민)

가. 제안이유

○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학로 등의 효율적인 교통안전 도모

나. 주요내용

○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○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. (안 제4조)

○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. (안 제5 ~ 6조)

○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. (안 제7조)

○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력 할 수 있음. (안 제8조)

○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. 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춘근)

○ 「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」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